

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13-44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3. 5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폐지사유

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대한 전부개정(2005.1.27) 시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수방단의 설치·운영 규정이 폐지되고,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(같은 법 제66조)의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「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「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」를 폐지함

3. 폐지근거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

4. 폐지조례안 : 따로 붙임

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없음

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13. 04. 18 ~ 2013. 05. 08 (제출된 의견 없음)

나.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다.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라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 (2013. 05. 24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